



한국언어과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교육 자료집

2021. 2.

한국언어과학회 편집위원회

## 목차 | Contents

### 제1장 연구윤리의 정의

1. 연구윤리란 | 01
2. 연구의 진실성 요건 | 02
3.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03

### 제2장 연구윤리규정

1. 한국언어과학회 연구윤리규정 | 04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 09

### 제3장 연구 및 출판윤리 교육자료

1.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 20
2. 저자를 위한 국제표준: 책임 있는 연구 출판 | 24

참고문헌 | 29

## 제1장

## 연구윤리의 정의\*

### I 연구윤리란?

-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알고 실천해야 할 가치나 규범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제2장제5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73호, 2018.7.17.)>

#### 제2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 1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윤리의 정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첫걸음」(2019)의 내용을 한국어과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 교육을 위해 재가공한 것임을 밝힘

## 2 연구의 진실성 요건

- 연구의 진실성이란 연구자가 연구 수행의 전과정(제안, 계획, 보고, 검토, 확산 등)에서 연구의 핵심가치인 ①객관성, ②정직성, ③개방성, ④공정성, ⑤책임성, ⑥관리 등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함

[표1] 연구진실성의 핵심가치

핵심 가치	내 용
객관성	특정한 동기가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정직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 활용하고 보고해야 함
개방성	연구 수행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공정성	연구자원 배분, 연구업적 평가 등에서 친분이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책임성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관리	연구의 가치가 잘 확산되고 연구자들의 활동이 진작 될 수 있도록 연구공동체를 운영해야 함

자료출처: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 2017. pp.23~30.<sup>2)</sup>

2)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첫걸음」(한국연구재단 2019) 11쪽의 내용 재인용

### 3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부당한 중복게재,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으로 규정.

#### ● 연구부정행위 범위

[표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구분	내용
위조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하는 행위
변조	연구수행 과정에서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임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형, 삭제, 왜곡하여 기록하는 행위
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성과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행위</li> <li>•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 용어, 문장, 표현, 그림, 표, 사진, 상, 데이터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는 행위</li> <li>• 타인의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쓰지 않고 풀어쓰기 (paraphrasing) 또는 요약(summarizing)을 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는 경우</li> <li>•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를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li> <li>• 2차 문헌을 활용하면서 재인용 표기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해서만 출처를 표기한 하는 경우</li> </ul>
부당한 저자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에 지적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li> <li>• 연구에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경우</li> <li>• 저자들의 표기 순서와 연구 기여도를 적절하게 배열하지 않은 경우</li> </ul>
부당한 중복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적절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li> <li>•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러 번 활용하면서 모든 인용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li> </ul>
연구부정 행위 조사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li> <li>•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li> </ul>

**I 한국언어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표절 금지, 부당저자표시 금지 및 중복(이중)게재 금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학회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표절 금지: 저자는 본인이 수행하지 아니한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제시하면 안 된다.
- 2) 부당저자표시 금지: 저자는 본인이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본인을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 3) 중복(이중)게재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본인의 연구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연구윤리위원회)본회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학회 회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1) 구성: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전공을 고려하여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2명을 포함하되,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한다.
- 2) 권한: 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 3) 예비조사 : 회장 또는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전 제기된 안전에 대한 예비 조사를 할 수 있다.
- 4) 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그 의결권을 서면으로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5) 기피, 회피, 제척

- ①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 ④ 전항에 따라 기피, 회피, 제척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 대상에 대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행위
- 3) 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 6) 명시적인 심사결과

제 5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지침이나 관례에 따른다.

제 6 조 (심사 절차)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루어진다. 심사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며, 사안에 따라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은 그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며,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 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경과를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 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심사 종료 후 7일내로 해당연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7)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연구자의 재심의 요청을 허용할 수 있다.
- 8) 위원장은 심의(필요 시 재심의) 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9) 학회는 연구윤리심사 후 해당 연구자에게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7 조 (이의제기 및 재심사)

- 1) 제보자 또는 심사대상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재심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3) 재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8 조 (징계의 종류와 징계수위) 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상임이사회에 권고하고, 징계의 종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경고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논문투고 자격 정지 (기간은 사안별로 결정)
- 4) 회원자격 정지 (기간은 1년-5년 간 사안별로 결정)
- 5) 제명

제 9 조 (표절검사 프로그램) 논문투고 시 표절 검사 프로그램(<http://www.kci.go.kr>)을 활용하여 표절의심문장(8어절 이상)이 발견 시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제 10 조 (연구자 정보공개1)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다음과 같이 논문에 정확하게 밝힌다. 대학교수(전임/비전임)인 경우는 “성명/OO 대학/교수(부교수/조교수)“로, 대학 소속 강사인 경우는 “성명/OO대학/강사“로, 대학소속 대학원생인 경우는 “성명/OO대학/대학원생“으로, 대학소속 대학생인 경우는 “성명/OO대학/학생“으로, 대학소속 박사후연구원인 경우는 “성명/OO 대학/박사후연구원“으로, 초중등학교 교사인 경우는 “성명/OO학교/교사“로,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는 “성명“으로 표시한다.

(연구자 정보공개 2) 논문 투고시, 투고한 논문의 저자 중 직계 자녀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로 참여한 경우, 연구윤리체크리스트 내 “투고 논문 직계 자녀 주/공저자 참여 내용” 부분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구윤리교육) 학회는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에 대하여 연 4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편집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연구윤리규정에 대하여 현장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제 12 조 (IBR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회원은 수행하기 전에 연구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

### 제13조 (출판업적)

- 1) 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국한하여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연구업적은 이러한 연구부분에 한정하여서 인정받는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이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제14조 (연구자료 및 연구물의 중복게재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회원은 이전에 출판된 자료나 연구물(출판 예정이나 심사 중인 자료나 이를 이용한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자료나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논문 투고와 관련하여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지침이나 관례에 따른다.

- 부칙 1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 본 개정세칙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3 본 개정세칙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4 본 개정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5 본 개정세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6 본 개정세칙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7 본 개정세칙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8 본 개정세칙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 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논문, 간행물, 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적인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의 사항을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 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 제2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준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할 수 있다.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하여 자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 지침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4.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7.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제10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

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



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0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 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존

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 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①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제28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수사외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후속조치 및 조사,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63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 I 연구논문의 부당 저자 표시

- 출처: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19.10.01.

## 1. 저자의 정의

- 해당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
- ※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지적 기여의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관행은 학문 분야마다 다를 수 있음

## 2. 부당한 저자 표시의 정의

-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명단에 포함시키는 행위
-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

## &lt;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제1항제4호) [교육부훈령 263호]&gt;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3. 부당한 저자 표시 유형

#### □ 강요저자(Coercive Authorship)

- 연구실이나 학과의 시니어 연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니어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논문에 추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
- 이와 더불어 미묘한 "환경적(environmental)" 압력의 결과로 포함되는 저자들도 강요저자에 해당됨

#### □ 명예저자(Honorary Authorship)

- 손님저자(Guest author), 선물저자(Gift author), 명예저자(Honorary Author) 등으로 불리며 연구과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자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
- 명예저자는 주로 주 저자(main author)의 상급자 또는 감독자가 명예저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논문의 책임 저자가 자발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은 저자로 기재되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음

#### □ 상호지원저자(Mutual support authorship)

- 두 사람 이상의 연구자들이 협약을 맺어 모든 협약자의 이름을 모든 논문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용됨

#### □ 중복저자(Duplication authorship)

- 동일한 내용을 여러 저널에 실는 것으로 이 역시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용됨

#### □ 유령저자(Ghost authorship)

- 저자의 자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저자명단에서 빠진 사람을 의미함

#### □ 저자됨의 거절(Denial of authorship)

-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과학적 공동연구로 생각하여 데이터 생산을 한 연구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소위 '공동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을 저자에 포함하지도 않고, 이 사람의 기여를 정확히 알리지도 않은 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임
- 저자됨의 거절은 '표절(plagiarism)'의 한 형태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함

#### 4.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요건

- 저자가 되기 위한 4가지 기준

-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②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③ 출판될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④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어느 공저자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는 상기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4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명시되어야 함
- 연구자들은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식별할 책임이 있음

#### 5. 교신저자의 기준

- 교신저자는 원고의 투고,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출판 과정 동안 투고된 학술지와 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짐
-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와 전문가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편집인의 질문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이 가능해야 함

#### 6. 저자가 아닌 기여자(non-author contributors)

- 저자가 아닌 기여자들은 저자됨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써 저자로 기재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들의 공로는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저자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연구자들은 감사의 글(acknowledgment)에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되거나, 임상 조사자(clinical investigators) 또는 참여 조사자(participating investigators)와 같은 명목으로 기록될 수 있음
-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은 연구의 자료와 결론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이를 확인한다는 의미이므로, 교신저자는 감사의 글에 표시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에 대해 서면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7.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해당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표시함으로써 연구의 공적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함
- 해당 학문 또는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저자 및 감사 표시 기준에 따라 저자로 표시될 명단의 후보(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감사 표시를 할 기여자 등)를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후 기록하고, 논문의 최종 원고 초안에 대해 모든 저자 및 기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연구논문 작성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출처: <윤리적인 연구출판을 위한 국제규범> 한국연구재단, 2019.

### 책임 있는 연구 출판

1. 건전성과 신뢰성(Soundness and Reliability)
2. 정직성(Honesty)
3. 균형성(Balance)
4. 독창성(Originality)
5. 투명성(Transparency)
6. 적절한 저자됨과 감사문(Appropriate Authorship and Acknowledgement)
7. 책무와 책임(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8. 전문가 심사 및 출판 규약 준수(Adherence to Peer Review and Publication Conventions)

#### 1. 건전성과 신뢰성

- 보고된 연구는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 보고된 연구는 건전하고 신중하게 수행해야 함
- 연구자는 적절한 데이터 분석 및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 함(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따라야 함)
- 저자는 자신의 연구와 출판물의 내용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함
- 연구자는 연구의 모든 단계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방법과 결과가 정확하게 보고 되도록 보장해야 함
- 저자는 계산, 데이터 제시, 초고/투고 원고 및 교정본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

#### 2. 정직성

- 연구자는 결과를 명확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위조, 변조 또는 부적절한 데이터 조작 없이 제시해야 함
- 연구자는 연구 방법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기술하여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연구 보고는 완전해야 함(부작용, 불일치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소견이나 저자 또는 연구비 지원자의 가설 또는 해석을 뒷받침하지 않는 결과를 생략해서는 안 됨)
- 연구비 지원자 및 후원자는 자신의 제품이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조사 결과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어야 함
- 저자가 투고, 승인 또는 출판된 작업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편집인에게 이를 알려야 함(저자는 편집인과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 또는 철회 기사를 게재해야 함)
- 저자는 인용과 출처에서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함
- 저자는 다른 출판물에 인용된 문헌을 읽지 않은 경우 해당 참고문헌을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 됨

### 3. 균형성

- 새로운 연구 결과는 이전 연구의 맥락에서 제시되어야 함
- 타인의 작업은 공정하게 표현되어야 함
- 기존 연구의 학술적 검토 및 종합은 완전하고,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안된 가설 또는 해석을 뒷받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결과를 포함해야 함
- 단일한 견해나 논증을 제시하는 논설 혹은 의견은 학술적 종설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함
- 연구의 한계가 논문에 다루어져야 함

### 4. 독창성

- 저자는 출판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투고된 작업이 독창적이며 다른 언어로 출판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편집인이 공동 출판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하나의 논문을 하나 이상의 출판사에 동시에 투고해서는 안 됨
- 논문이 공동 출판되면 이 사실을 독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함
- 적용 가능한 저작권법 및 규약을 따라야 함(저작권 자료(예 : 표, 그림 또는 광범위한 인용문)는 적절한 허가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복제할 수 있음)
- 다른 연구자와 저자 본인의 관련 선행 연구 및 출판물을 적절하게 인정하고 참조되어야 함

- 가능하다면 일차 문헌(primary literature)을 인용해야 함
- 다른 연구자에 의한 데이터, 텍스트, 그림 또는 개념은 적절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저자 자신의 것처럼 제시되어서는 안 됨
- 다른 연구자의 출판물에서 직접 가져온 원문은 적절한 출처와 함께 인용 부호로 표시해야 함
- 저자는 이전에 연구 결과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혹은 단일 데이터 세트에 대한 여러 보고 또는 분석을 다른 곳에서 발표하기 위해 고려중인 경우 편집인에게 이를 알려야 함
- 저자는 관련 출판물 또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의 사본을 제공해야 함
- 단일 연구 사업에서 발생한 여러 출판물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일차 논문을 참조 해야 함
- 번역 및 다른 독자층을 위한 각색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원 출처를 인정해야 하며, 관련 저작권 협약 및 허가 요구 사항을 존중해야 함
-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저작물을 재출판하기 전에 원본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5. 투명성

- 직접 및 간접적 재정 지원, 장비 또는 기자재의 공급 및 기타 지원(예 : 전문가 통계 또는 작문 지원)을 포함한 모든 연구비 지원 출처가 공개되어야 함
- 저자는 연구 설계, 수행, 분석, 해석 및 보고에 대한 연구비 지원 기관(들) 또는 후원자(있는 경우)의 역할을 공개해야 함
- 저자는 연구 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나, 혹은 편집인, 심사자 또는 독자가 합리적으로 알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되는 관련 재정적, 비재정적 이해 및 관계를 공개해야 함

## 6. 적절한 저자됨과 감사문

- 연구 문헌은 어떠한 사실의 발견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기록해야 함
- 주요한 기여자들을 저자로 기재하고, 연구나 출판에 대한 기여도가 낮거나 혹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기여만 제공한 이들을 감사문에 기재하는 경우, 저자됨과 감사문의 기준을 연구 시작부터 합의해야 함
- 연구자는 오로지 저자됨의 기준을 충족하는(즉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 개인에게만 저자됨을 수여할 수 있고 저자됨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기관과 학술지 편집인은 손님, 선물 및 유명 저자를 방지하는 관례를 장려해야 함
- 모든 저자들은 저자 명단에 오를 것에 동의해야 하며 투고 및 승인된 출판물의 판본을 확인해야 함
- 저자 목록에 대한 변경 사항은 목록에서 삭제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저자가 승인해야 함
- 교신저자는 편집인과 다른 저자들 간의 연락 지점 역할을 해야하며, 공동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출판물에 대한 주요 결정에 참여시켜야 함
- 저자는 실제로 연구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없는 개인이 연구에 기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감사문을 사용해서는 안 됨

## 7. 책무와 책임

- 모든 저자는 보고된 작업을 읽고 익숙해져 있어야 하며, 출판물이 이 지침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함(만약 저자들이 연구와 보고의 특정 측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면, 이는 출판물에 명시해야 함)
- 저자는 출판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한 경우 즉시 편집인과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저자는 재료, 시약,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세트를 요청하는 다른 연구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약, 요구 사항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자, 기관 및 연구비 지원 기관은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저자들은 출판 후 논평과 게재된 독자통신에 적절하게 응답해야 함
- 저자들은 독자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명이나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8. 전문가 심사 및 출판 규약 준수

- 저자들은 출판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하나의 원고를 하나 이상의 출판사에 동시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 저자들은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원고의 심사를 취소하거나 심사자 의견에 응답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를 편집인에게 알려야 함
- 저자들은 전문적이며 시의적절하게 심사자의 의견에 응답해야 함
- 저자들은 출판사의 언론 보도 유예(press embargo) 요구를 존중해야 하며

학술자에게 재가 승인된(하지만 아직 출판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됨

- 저자들과 소속 기관은 출판물과 관련된 미디어 활동(보도 자료 및 기자 회견 등)을 조정하기 위해 출판사와 연락하고 협조해야 함
- 보도 자료는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연구 결과보다 더 나아간 진술을 포함해서는 안 됨

## 참고문헌

-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 첫걸음」 한국연구재단, 2019.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2019.10.01.
- 「윤리적인 연구출판을 위한 국제규범」 한국연구재단, 2019.